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73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이종배·권영진·이인선
김기웅·김미애·서지영
서명옥·엄태영·이만희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급여지급 기간 최대 1년 6개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해고뿐 아니라 인사고과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

년 6개월로 하고자 함.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형태를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 등까지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1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제1항 단서 중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1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

한 처우”로 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⑦ (생 략)

제37조(벌칙) ① (생 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1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

⑤ -----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는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2. (생략)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 9. (생략)

③ · ④ (생략)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4. -----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5. ~ 9.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